

(第50回-條例第1次)

要求의 件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報告드리겠습니다.

閉會期間中 委員會 활동을 위해서는 地方自治法 第53條 但書 中 「委員會의 開會는 閉會期間 中에는 本會議의 議決이 있거나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要求가 있을 때에 한하여 開會할 수 있다」는 規定에 의거 절차상 꼭 本會議 議決을 거쳐야 한다고 思料됩니다.

단 本 案件의 條文의 內容 中 第1項의 말미 部分 「特別委員會가 開會될 수 있도록 議決을 要求함을 特別委員會를 開會한다」로, 第2項의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 계속됨을 議決될 때까지로 한다」고 字句를 修正하여 本會議의 議決을 要求함이 문맥의 간결성으로 보나 말미의 매끄러운 매듭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思料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한 바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泰雄 提案說明과 檢討報告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委員이 있으시면 질의하 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네, 없으시면 議事日程 第3項 閉會期間中 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 開會要求의 件을 原案대로 議決하고자 하는데 異議없으시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없으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照)

閉會期間中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開會要求의件

發議年月日：1991. 9. 11

發議者：康明秀議員外1人

1. 主 文

- (1) 地方自治法 第53條 但書規定에 의하여 閉會期間中에도 서울特別市條例審議整備特別委員會가 開會될 수 있도록 議決을 要求함.
- (2) 閉會期間中 同 特別委員會의 活動은 條例審議整備 結果가 本會議에서 議決될 때까지 繼續됨.

2. 提案理由

同 特別委員會가 效率인 條例審議整備를 위하여 閉會期間中에도 活動, 運營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委員長 金泰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散會를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13時 07分 散會)

○出席委員

金泰雄	康明秀	李丁煥
朴別根	李元局	朴光勳
金炳植	曹沼鉉	金相復
劉起鍾	呂範九	金吉原
元松喜		